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73호, 2009. 6. 24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산물의 중금속, 곰팡이독소 오염 우려가 높은 가공식품의 푸모니신 및 오크라톡신 A,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, 별첨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통해 통상마찰 사전예방 및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당근, 마늘, 부추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 신설 [안 제2, 5, 5), (3)]

- (1)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기준 마련 필요
- (2) 당근, 마늘, 부추 등 3종 농산물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 신설
- (3) 중금속으로 인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

나. 옥수수함유식품에 대한 푸모니신 기준 신설 [안 제2, 5, 8), (4) 및 안 제5, 1, 5), (11)]

- (1) 원료로 사용된 옥수수로 인해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기 쉬운 가공식품의 푸모니신 기준 신설
- (2) 옥수수, 옥수수단순가공품 또는 옥수수가루를 합하여 50%이상 함유한 곡류가공품, 시리얼류 및 과자류, 팝콘용옥수수가공품의 푸모니신 기준을 1 mg/kg 이하로 신설함.
- (3) 옥수수 함유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

다. 메주 및 고춧가루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 신설 및 시험법 개정 [안 제2, 5, 8), (5) 및 안 제10. 13, 6)]

- (1) 곰팡이 오염 우려가 있는 메주 및 고춧가루의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기준 신설 및 그에 따른 시험법 개정
- (2) 메주 및 고춧가루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을 각각 20 µg/kg 이하, 7 µg/kg 이하로 신설하고, 오크라톡신 A의 시험법 중 추출 및 정제방법을 개선하여 시험법 개정
- (3) 메주 및 고춧가루의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안전성 확보

라. 과자류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신설 [안 제5. 1. 5), (6)]

- (1) 발효제품을 함유한 과자류의 세균수에 대한 현실성 있는 규격 필요
- (2) 발효제품을 함유한 과자류는 세균수 규격을 제외하도록 개정
- (3) 과자류의 원료 및 제조공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격 마련

마. 벌꿀의 수분, 전화당 등 규격 개정 [안 제5, 29, 29-7, 5)의 (1) 및 (4)]

- (1) 벌꿀의 주밀원 및 사양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Codex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벌꿀규격 개정 필요
- (2) 벌꿀 중 수분 및 전화당 규격 개정
- (3) 벌꿀 규격의 현실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통상마찰 해소

바. 미량영양성분 중 엽산, 콜린, 비오틴에 대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용한 시험법 신설 [안 제10, 11, 2), (13)~(15)]

- (1) 엽산, 콜린, 비오틴 분석을 위해 정확성과 정밀성이 좋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시험법 마련
- (2) 엽산, 콜린, 비오틴에 대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용한 시험법 신설
- (3) 미량영양성분에 대한 시험법 개선

사. 동물용의약품인 락토파민과 초산멜렌게스트롤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[안 제10, 15, 3), (2)의 및 ⑤, 안 [별표 7]의 (85) 및 (86)]

- (1)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 승인되어 있으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마련
- (2) 락토파민과 초산멜렌게스트롤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이에 따른 시험법 신설
- (3) 잔류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『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』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84호, 2009. 7. 6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중 납,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, 잔류용매, 불소화물,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등 유해물질과 대장균 등 미생물 규격을 신설강화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5'-구아닐산이나트륨 등 80 품목의 성분규격 제·개정

- (1) 납, 카드뮴, 수은 등 유해중금속 규격 강화 또는 신설(Ⅱ. 제3. 가. 15, 16, 17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43, 46, 50, 51, 53, 54, 55, 56,